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16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

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3조).

법률 제 호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을 "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해당"을 "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사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재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사료의 재검사) ① (생	제23조(사료의 재검사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	2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	
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	
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농림축</u>	<u>검사</u>
<u>산식품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지사	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
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	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
	<u>.</u>
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	③
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	
또는 시・도지사는 농림축산식	
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	
결과를 <u>해당</u> 제조업자 또는 수	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
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<u>터 14일 이내에 해당</u>
	<u>.</u>
<u><신 설></u>	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
	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

	<u> 따른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